



【검토보고서】

2019.2.12(화)
제302회 임시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자치행정과)
- 제출일 : 2019년 2월 1일

2.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 나. 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과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 ~ 안 제3조)
- 나.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임원 및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 마. 의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 아. 재원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안 제17조)
- 자. 예산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안 제20조)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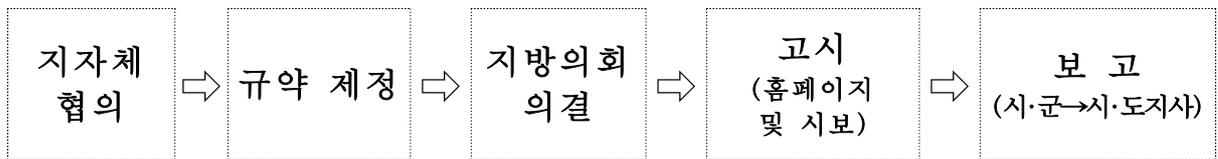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나. 구성기관 : 78개 기초자치단체 ('18.11.기준)

다. 예산조치 : 협의회 연간 부담금 500만원 반영(2019년 1회추경)

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지방자치법 제152조)



- (규약제정) 명칭, 구성 자치단체, 처리하는 사무, 조직·위원 선임 방법, 경비 부담 및 지출 방법 등의 내용 포함
- (지방의회 의결) 각 자치단체 의회에서 규약 의결
- (고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
- (보고) 상급기관에 보고

5. 검토의견

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가입현황 : 전국 78개 지자체 (별첨1 참조)
- 구성일시 : 2018. 10. 15.
 - 창립결의, 규약승인 및 임원구성(회장:논산시장, 사무국장:성동구청장)
- 부담금 : 연500만원
- 협의회 목적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자치분권 정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양주시 건설』

- ⇒ 주민주권 실현(주민참여권 보장 등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중앙-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국고보조사업 개편)
 - ※ 국세:지방세 비율개편 : 8:2 → 7:3
-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정책결정 과정 자치단체의 참여 제도화)
-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 시군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근거마련

나. 안전 배경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로써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임
- 본 동의안은 양주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고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 규약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22개의 조문 및 부칙

1) 목적(안 제2조)

-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함

2) 기능(안 제3조)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3) 구성(안 제4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4) 임원(안 제5조 ~ 안 제6조)

-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과 감사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

부총장 선임

-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5)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안 제8조)

-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회의로 구분, 정기위원총회는 연 1회 반드시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등 기타 임원과 자문위원을 배석시킬 수 있음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의안 제출(안 제9조)

-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7)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함

8) 사무국(안 제13조 ~ 안 제14조)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구성 운영함
- 사무국은 회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며,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함

9) 자문위원(안 제15조)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10) 재원(안 제16조 ~ 안 제17조)

- 재원은 시·군·구의 정기 및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함
-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함

11) 예산 및 결산, 감사 실시(안 제19조 ~ 안 제20조)

-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하며,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함
-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라.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양주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고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7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협의 및 시·군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으로 공동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별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

2018.11.8. 현재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
계		총 78개
수도권	서울(16)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인천(4)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
	경기(21)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중부권	대전(4)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충북(3)	중평군, 음성군, 괴산군
	충남(6)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강원(4)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남권	부산(3)	북구, 연제구, 사상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북(1)	구미시
	경남(2)	창원시, 거제시
호남권	광주(3)	동구, 남구, 북구
	전북(4)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남(2)	담양군, 영광군

※ 의회 의결 전 사무국에 가입의사를 통보한 가입희망 기초자치단체 명단임.

※ 진한 글씨가 회장단(임원) 지자체.